

1 개념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
 -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 -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

2 제도 도입 추진경과

■ '94년부터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 운영

-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,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·세출 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(구.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)
-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, 공개방법,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

■ '06년부터 「지방재정 공시제도」 도입

- 재정공시 대상, 공시방법, 시기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(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)
- 기존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의 한계를 극복하고,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

1 재정공시 개선사항

■ 결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

-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(5-2.) 공시 서식 개선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」에 의한 기준 면적으로 서식 수정
- 기금 성과분석 결과(9-3.)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신규 추가 상대평가에서 ‘절대평가’로 전환
 - ⇒ 개선 권고사항 미이행률에 따라 감점 조치*(최대 △2점) 하고 있으나, 정량 지표가 아닌 관계로 미제출시 감점 방식으로 변경(△1점)
- 재정분석 결과(9-4.) 재정보효율성 분석지표 순서 변경
-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(9-13.) 2020년도 6월말까지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%
 - ※ 특·광역 65%, 기초(세종, 제포 포함) 57.0%, 공기업 56.7%로 변경

■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식 변경 및 기준 개선

- 성인지 예산현황(4-2.) **성별영향평가사업**(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) 변경
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(4-3.) **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** 서식 변경, **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** 추가
- 국외여비 편성현황(4-6.) **국외업무여비, 국제화여비에 대한 설명** 추가
- 업무추진비 편성현황(4-8.) 2021회계연도부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시를 “**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**” 예산금액 추가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출 효율화, 5-1.) **예산집행 노력(이월·불용액 절감)** 추가

(참고) 2021년도(2020회계연도) 결산기준 재정공시 항목

자치단체 재정공시(59개)		행정안전부 통합공시(36개)	
분류	세부항목	분류	세부항목
결산규모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결산 • 세출결산 • 기금운영현황 • 지역통합재정통계 	결산규모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입결산 • 세출결산 • 기금현재액 • 지역통합재정통계
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자립도[결산] • 재정자주도[결산] • 통합재정수지[결산] 	재정여건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자립도[결산] • 재정자주도[결산] • 통합재정수지비율[결산]
부채/채무/ 채권 (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부채 현황 • 지자체 부채 현황 •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•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 • 우발부채 현황 • 지자체 채무 현황 •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• 일시차입금 현황 •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• 재정건전성관리 계획·이행현황 • 보증채무 현황 • 채권 현황 	부채/채무/ 채권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대비채무비율 • 지자체부채비율 • 지방공기업부채비율 • 출자·출연기관 부채현황 • 민자사업재정부담액 • 보증채무 비율 • 채권현황
주요예산 집행결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경비 집행현황 •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•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•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• 국외여비 집행현황 •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•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•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• 연말지출 비율 •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	주요예산 집행결과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무원인건비비율 • 업무추진비비율 • 지방의회경비비율 •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•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비율 • 연말지출비율 • 기본경비비율
지방세/ 세외수입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세 징수 실적 • 지방세 지출현황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	지방세/ 세외수입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세 징수 실적 • 지방세 지출현황 •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
복지/ 민간지원 (6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복지비 •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•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•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• 행사 • 축제경비 	복지/ 민간지원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복지비비율 • 지방보조금비율 • 행사·축제경비비율
재산및물품/ 지방공공기관 (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유재산 및 물품 • 출자·출연금 집행현황 • 출자·출연기관현황 • 지방공기업 현황 	재산및물품/ 지방공공기 관 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자·출연금비율 •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
재정성과/ 평가 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과보고서 • 복식부기 재무제표 • 기금성과분석결과 • 재정분석 결과 •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• 성인지 결산현황 • 행사·축제 원가회계 정보 •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• 수의계약 현황 •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•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·처리현황 •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• 신속집행 실적 • 감사결과 	재정성과/ 평가 (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인지 결산현황 •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•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• 복식부기 재무현황 • 수의계약비율 •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• 신속집행 실적
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(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• 지방채 발행사업 • 민간투자사업 		
특수공시 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(5건 이상) 		

1 공시주체 : 모든 지방자치단체장

2 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-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- 예산공시 4개 분류 16개 세부항목,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

●● 공통공시의 범위

→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(지방재정법 제60조)

-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, 성과보고서 포함)
- 재무제표
- 채권관리 현황
- 기금운용 현황
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지역통합재정통계
-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- 중기지방재정계획
- 제36조의2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-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-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-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-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-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(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 등)

→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(시행령 제68조)

-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-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- 특수공시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-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●● 특수공시의 대상

-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 - 공시대상 건수 대비 2~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
- 대상사업 선정기준
 -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 - ※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,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
 - 주민 관심도 제고,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
 -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
(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)
 - ※ 공시건수,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

특수공시사항 예시

-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
-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
-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
-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 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
-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

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- 정기공시 : 매년 2월, 8월 총 2회 실시
 - ※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(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)
- 수시공시 :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 가능한 시점에 추가 공시
- 작성방법 : 공시편람을 준수하되,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

4 공시방법

-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, 편의성, 시청률,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
-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, 지역방송, 시·군정지(반상회보) 등
 -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
 -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·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
 -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·군정지(반상회보)를 비치
 -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
-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
 - ※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,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
 - ※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